

대전지방법원

관 결

사 건 2007가단65013 구상금
원 고 00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피 고 1. 오00
대전 대덕구
2. 00교회
청주시 상당구
3. □□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변 론 종 결 2008. 3. 25.
판 결 선 고 2008. 6.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60,346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8.부터 2008.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80,79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충북 7노0000호 포터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오00은 피고 00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전도사이며, 피고 교회는 충북 70다0000호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오00은 피고 교회의 유년부의 예배 및 교육을 담당하며 왔는데 2005. 4. 3. 10:55경 피고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였던 변00(사고 당시 만 6세 7월 남짓)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 차량에 변00을 탑승시켜 00고등학교 방면에서 00교 방면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변00의 집 부근인 청주시 소재 00공업사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피고는 편도 1차로 도로와 흠길인 길가장자리 구역에 걸쳐 피고차량을 정차한 뒤 운전

석에 앉은 채 변00 혼자 피고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2) 최00은 위 당시에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일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부분에서 때마침 피고 차량에서 내려 그 차량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변00을 충격하여 변00로 하여금 대뇌실질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사고현장의 도로상황

(1)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원고 차량이나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00천이 있고 차로 밖에는 폭이 좁은 길가장자리가 있으며, 반대차로 방향으로 는 보도와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

(2) 변00의 집은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00공업사와 00 점포 사이의 길로 들어간 지점에 있는데 그 길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그곳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횡단보도를 이용 하려면 00교 사거리로 먼 길을 나아가야 한다.

(4) 이 사건 사고지점은 00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다.

라.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2005. 6. 17.부터 2007. 8. 24.까지 변00의 치료비 등으로 4,230,670원, 변호사비용 등으로 7,370,320원, 변00의 손해배상소송 재판상 화해금으로 32,000,000원 등 합계 43,600,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오00은 매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변00 등 어린이들을 교회의 예배와 교육이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여 사고지점에 횡단보도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변00이 무단횡단 하도록 방치하였는바,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 비율은 80%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 교회가 피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표시등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설령, 피고 오00의 과실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라든, 그 과실비율은 10%를 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최00이 도로에 정차한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주의운전을 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차량을 추월한 과실과 피고 오00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 변00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차로에서 변00을 차에서 보도로 내리게 하거나 집 부근까지 태워다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차에서 함께 내려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진
행방향에서 혼자 차에서 내리게 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도록 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
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관계
에서의 책임분담비율은 피고 00 65%, 피고 오00 3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오00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교회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 내지 피고 오00의 사용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
하여 원고 출연에 의한 공동면책액 43,600,990원 중 피고 오00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5,260,346원(43,600,990원×3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
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5,260,3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공동면책액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7. 9. 28.부터 피고가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 _____